

가

가

"

가

" "

가

"

.

1

"

가

"

"

가

(

"

"

)"

,

"

"

"

(

"

"

)

,

"

"

"

"

.

2

"

"

"

"

,

가

"

"

"

.

2

1.

가

"

(

"

"

)"

"

"

,

"

"

"

"

,

"

"

"

"

.

2

2.

가

가

, " " " " .
가. .

2 3, 가 , (1)

" " " " , " .(: ,
, , , ,)"
" (: . . .
." , ,
" 가 .(, ,
)" " (:
.) ."

2 3. " "

" " , " .(,)"
" (:
) . " , (2) .

(2)

(: .) .

2 4.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한국보훈복지공단수익사업지원및 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자립지원에 관한훈령</u></p>	<p><u>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수익사업지원및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자립지원에관한훈령</u></p>
<p>1. 이 훈령은 이미 시행중인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과 아울러 한국보훈복지공단의 항구적이고 안전한 수익원을 확보할 수 있는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라는 대통령각하의 지시에 따라 동 공단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부여하는 것입니다.</p> <p>2. 관계기관의 장은 관계법령과 이 훈령에 따라 한국보훈복지공단 수익사업 및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기 바랍니다.</p> <p>1. 기본방침</p> <p>가. 한국보훈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그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자체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p>	<p>1. -----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이하 “용사촌”이라 한다)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 공단 -----</p> <p>2. ----- 공단 ----- 용사촌 -----</p> <p>1. -----</p> <p>가. 공단 -----</p>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
기관은 동 공단의 생산품을 우
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나. 공단의 사장은 공단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대
책을 강구 시행하며, 제품수
요기관과 체결한 계약사항은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국가보훈처 조치사항

가.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이하
“용사촌”이라 한다)이 자립의
수준까지 육성되도록 연차별
육성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나. 용사촌의 협동사업은 스스로
자활, 자립하려는 의지와 새
마을 정신을 바탕으로 구성원
의 소득증대와 직결되도록 지
도, 육성한다.

다. (생략)

라. 국가보훈처장은 공단 사장의
요청에 의하여 우선 구매대상
품목 및 수량을 매회계년도
개시 1월전에 공고하여야 하
며, 공고된 품목과 수량이 변
경되거나 추가되는 경우에는
또한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마. (생략)

3. 관계부처 조치사항

----- 공단 -----

나. 공단 이사장 -----

2. -----

가. 용사촌의 자립·자활을 위하
여 적극 노력한다.

나. 구성원의 자립자활 의지와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용사촌의 협동사업이 구
성원의 소득증대와 직결되도
록 지도·육성한다.

다. (현행과 같음)

라. ----- 공단 이사장

마. (현행과 같음)

3. -----

다. 생산품의 가격결정

공단 및 용사촌·복지공장 생
산품의 발주시 가격은 국가기
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는 예산회계법시행령에 의한
재무관의 예정가격으로 하고,
정부관리기업체에 있어서는
자체회계규정에 따르는 구매
관의 내정가격에 의한다. 다
만, 상기 가격이 공단 수익사
업지원 및 국가유공자 자립지
원에 실효를 거둘 수 없다고
인정할 때, 국가보훈처장은 수
요기관의 중앙관서의 장과 협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과 따
로 협의한 특례가격에 의한다.

라. (생략)

마. 자재확보

공단 및 용사촌 복지공장의
주요 생산자재확보를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조달청장은 이를 지원
하며, 관계부처에서는 정부고
시가격으로 지원토록 조치한
다.(관련부처 : 통상산업부, 조
달청, 산림청등)

<삭 제>

라. (현행과 같음)

마. -----

----- 최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관련부
처 : 산업자원부·조달청 및
산림청 등).

바. 금융지원

용사촌 복지공장 운영에 있어 시설 및 운영자금 용자요청이 있을 때에는 복지공장운영의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국가 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업체와의 계약된 미확정 채권 또는 확정채권 기타 부동산을 담보로 중소기업자금 또는 산업자금 등을 최저리 용자 지원한다.(관련부처: 재정경제원, 통상산업부등)

사. 용사촌 농수산 · 축산 및 조림사업 지원

- (1) (생략)
- (2) 국고 또는 지방비에 의한 보조사업체를 선정할 경우에는 최우선하여 지정함으로써 자립, 자활에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한다.
(관련부처: 내무부, 농수산부 등)

4. 지원계획 통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은 공단수익사업 및 용사촌 복지공장의 적극적인 지원효과

바. -----

----- 정부투자기관과의 계약에 의한 -----

----- 중소기업자금 -----
등을 최저리로 용자·지원한다(관련부처: 재정경제부·산업자원부 등).

사. -----

- (1) (현행과 같음)
- (2) 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을 선정할 경우에는 용사촌을 우선하여 선정함으로써 용사촌의 자립·자활에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한다
(관련부처: 행정자치부·농림부 및 해양수산부 등).

<삭 제>

거양을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이
공고한 생산품목에 대한 연간
발주계획량, 규격, 발주시기 및
납기, 기타 제품생산에 필요한
사항을 매년 3월 31일까지 국가
보훈처장에게 통보한다.

reasons. Such suspension and the lifting thereof shall be immediately notified, in writing, to the other Contracting Party through diplomatic channels.

Article 7

This Agreement shall not affect the rights or obligations of the Contracting Parties arising from other existing or future international agreements.

Article 8

1.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exchange samples of their valid passports or other travel documents equivalent to a valid passport mentioned in this Agreement through diplomatic channels at least thirty (30) days before this Agreement enters into force.

2. When one Contracting Party issues a new passport or other travel document equivalent to a valid passport or modifies those already exchanged, it shall notify the other Contracting Party of such new issuance or modification, and provide samples thereof, through diplomatic channels thirty (30) days before the date the new issuance or modification become effective.

Article 9

1.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thirty (30) days after the date of the last note, notifying the other Contracting Party that the necessary internal procedures fo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have been completed.

2. This Agreement can be amended at any moment by mutual consent of the Contracting Parties.

Article 10

This Agreement shall continue to be in force for an indefinite period

and may be terminated by either Contracting Party by giving prior notice through diplomatic channels. In this case the validity of this Agreement shall cease ninety (90) days after the date of the receipt of written notice through diplomatic channels.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greement.

Done in duplicate at Tallinn, on the 25th day of June 2001 in the Korean, Estonian and English languages, all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any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ESTONIA

국무총리훈령

○국무총리훈령 제419호

한국보훈복지공단수익사업지원및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자립지원에관한훈령중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01년 8월 16일

국무총리원

한국보훈복지공단수익사업지원및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자립지원에관한훈령중개정령

한국보훈복지공단수익사업지원및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자립지원에관한훈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한국보훈복지공단수익사업지원및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자립지원에관한훈령"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수익사업지원및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자립지원에관한훈령"으로 한다.

제1호중 "이미 시행중인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을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이하 "용사촌"이라 한다)"으로, "한국보훈복지공단"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농 공단"을 "공단"으로 한다.

제2호중 "한국보훈복지공단"을 "공단"으로,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을 "용사촌"으로 한다.

제2호의 1. 기관방침의 가목중 "한국보훈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공단"으로, "농 공단"을 "공단"으로 하고, 나목중 "공단의 사장"을 "공단 이사장"으로 한다.

제2호의 2. 국가보훈처 조치사항의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리목중 "공단 사장"을 "공단 이사장"으로 한다.

가. 용사촌의 자립·자활을 위하여 적당 노력한다.

나. 구성원의 자립사활 의지와 상부상조 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용사촌의 협동사업이 구성원의 소득증대와 직결되도록 지도·육성한다.

제2호의 3. 관계부처 조치사항의 가목을 삭제하고, 나목(1)중 "정부관리기업체"를 "정부투자기관"으로, "조치한다.(관련부처 : 국방부, 내무부, 문교부, 조달청, 한국담배인삼공사, 서울특별시)"를 "조치한다(관련부처 : 교육인적자원부·국방부·행정자치부·조달청·서울특별시 및 한국담배인삼공사 등)."로 하며, 다목을 삭제하고, 마목중 "정부보

시가격으로 시원도착 조치한다.(관련부처 : 농산산업부, 조달청, 산림청 등)"을 "최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관련부처 : 산업자원부·조달청 및 산림청 등)."로 한다.

제2호의 3. 관계부처 조치사항의 나목중 "정부관리기업체와의 계약권"을 "정부투자기관과의 계약에 의한"으로, "중소기업자금 또는 산업자금을 차지리 용자 지원한다.(관련부처 : 재정경제원, 농산산업부 등)"을 "중소기업자금 차유 차지리로 용자·지원한다(관련부처 : 재정경제부 및 산업자원부 등)."로 하고, 사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보조금 과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을 선정할 경우에는 용사촌을 우선하여 선정함으로써 용사촌의 자립·자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관련부처 : 행정자치부·농림부 및 해양수산부 등).

제2호의 4. 지원계획 동보문을 삭제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한국보훈복지공단법이 개정(2001. 1. 16. 법안 제6372호)되어 "한국보훈복지공단"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국무총리훈령·지시 일체정비방침에 따라 사회환경의 변화로 시의성을 상실한 새마을사업 관련 내용을 삭제하며, 변경된 행정기관의 명칭을 정비하는 등 일부 현실과 맞지 아니하거나 실효성이 없어진 규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